

=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=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. 4. 19 - - - - - 사하구청장
나. 회 부 일 자 : 2007. 4. 23
다. 상 정 일 자 : 제148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('07.5.7) 상정 의결.

2. 제안설명의 요지(임석진 세무과장)

가. 제안이유

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」 및 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개정 · 공포(2007.1.11)와 관련하여 국가주요정책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감면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고령화 사회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고령자의 역모기지 제도 실시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함(안 제5조의 2).
-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, 그 다음 3년간 50%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함(안 제21조의2).

3. 관계법령

-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
-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 제2항 제4호의 2
-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
-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제4조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

- 고령자의 역모기지 제도 실시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(안 제5조의 2)

-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
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, 그 다음 3년간 50%를 경감하는 규정을
신설(안 제21조의 2)

나. 적법성 부분은

지방자치법 제7조 및 제9조에 공익 등 사유가 있을 때에는
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과세면제와 불균일 과세를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
본 개정안은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음.

다. 우리구 세입에 미치는 영향

- 공공기관 지방이전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의 경우는 부산으로 이전이
확정된 공공기관이 12개이나 우리구관내 이전기관이 없어 당장 세입에
영향은 없음.

공공기관 부산이전

- 남구 문현단지 : 한국자산관리공사, 한국주택금융공사, 증권예탁결제원
대한주택보증, 한국남부발전, 한국청소년상담원
- 해운대 센텀시티 : 영화진흥위원회, 영상물등급위원회
- 영도구 동삼매립지 : 한국해양연구원, 한국해양수산개발원,
국립해양조사원,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

-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은 우리구 관내에도 대상이 되는 주택이 있어
이 제도가 실제로 적용되는 2008년부터는 재산세 감소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
예상됨.

역모기지 대상주택

- 대상 : 65세이상 소유한 전용면적 85㎡이하, 3억원이하 주택
- 건수 : 2,881건

라. 감면의 타당성은

-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의 경우는 연간소득 1,200만원이하인 65세이상 고령자가 소유한 85㎡이하의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저소득 고령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정책적 배려이며
-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일정기간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세제상의 지원을 하므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촉진시킨다는 타당성을 갖고 있어 본 조례개정안은 원안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 론 요 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